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4885 제출연월일: 2024. 10. 24.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서비스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직업 소개 업무 관련 정부 공동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변경하고, 취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국외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의 제목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업무"를 "선정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 받은"을 "선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을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할"을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받은"을 "선정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제6항에 따른 선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을 받은"을 "선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을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을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무료직업소개사업은"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구분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유료직업소개사업은"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구분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8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2. 제2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33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신고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 다.

제36조의3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1조의2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한다.

제44조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제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3조(권한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18조제1항, 제19조 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1. 제18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변경신고, 폐업신고, 사업정지 및 폐쇄조치
- 2. 제19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변경등록, 폐업신고, 사업정지, 등록취소, 청문 및 폐쇄조치
- 3. 제18조에 따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의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
-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5조제3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 제6조제2항 · 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19조제1항(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23조제1항, 제30조제1항"을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 제6조제2항 · 제3항, 제14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0조제1항 본문"으로, "국내 무료 ·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조치"를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조치"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u>증)</u>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	<u>선정)</u> 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	
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	
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	
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	
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	
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u>인</u>	<u>선</u>
<u>증</u> 할 수 있다.	<u>정</u>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②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u>인증</u>	<u>선정</u>
<u>업무</u>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업무
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③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u>선정된</u>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4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생략)
- 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 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 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 로 하다.
-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 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 여야 한다.
-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 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 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다.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할
·.
1
<u>선정된</u>
2. (현행과 같음)
3. <u>제6항에 따른 선정기준</u>
4 <u>선</u>
<u>정된</u>
⑤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일
<u><</u> 삭 제>

<u>⑥</u>			<u>선정</u>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7조(시장・군수 등의 협력) 특 제7조(시장・군수 등의 협력) 시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한다.

1. • 2. (생략)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u>유</u> <u>료직업소개사업은</u> 소개대상이 되 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장 ·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 외한다)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1. • 2. (현행과 같음)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 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 구분하여 주된 사업소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 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 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 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 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② ~ ⑥ (생 략)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지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단</u> <u>서 신설></u>

② (생 략)

구분하여 주된 사업
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u>다</u>
만, 제18조에 따라 국외 무료직
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
에 따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을 하는 자가 국외에 취업할 근
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제35조(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 기업의 폐업신고) 제18조·제19조 ·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
업의 폐업신고)
<u>다음 각 호의</u>
<u> 구분에 따라</u>
1. 제18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시
<u>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u>
2. 제2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33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제36조(허가・등록 등의 취소 등)
① <u>시장·</u>
<u> 군수・구청장</u>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 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 다.

- 1. ~ 3. (생략)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u>특별자</u> <u>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 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 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 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 ③ (생략)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 ① (생략)
- ② 제1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 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6조제1 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2.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시장·</u>
<u>군수·구청장</u>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장·군수·구청장</u>
1.・2. (현행과 같음)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u>특별자</u> <u>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 는 경우에 폐업기간, 폐업의 사 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 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 제36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u> 수·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등 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 문을 하여야 한다.
- 제37조(폐쇄조치) ①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 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 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생략)

③ <u>시장·</u>
<u> 군수 • 구청장</u>
제36조의3(청문)
시장·군수·구청장
· 제37조(폐쇄조치) ①
<u>시장·군수·구청장</u>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기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1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 7 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제18조·제19 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u>특별자</u> <u>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 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u>시장·군수</u>
<u>· 구청장</u>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보고 및 조사) ①
<u>시장·군수·구청</u>
<u>장</u>
② 시장·
 군수·구청장
<u>币 1 、 1 、 9 、 9</u>

- 에 출입하여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 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u>특별자</u> <u>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 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④ (생 략)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특별자치도지사·시</u> 장·군수 및 구청장 등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8조 ·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 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 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 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고 저 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

③ <u>시장·</u>
<u>군수·구청장</u>
④ (현행과 같음)
⑤
<u>시장·군수·구청장</u>

<u>기</u>	사	•	시	<u> 장</u>	•	군	<u>۲</u> .	구	- え	장	은
필	요	하1	다고	7	인)	정히	·면	관	계	행	정
기	관	의	장	에	게	0]	법	시	행	에	필
요	한	지	- 显	ই	결조	를	요	청호	할	수	있
다	•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의3(포상금) ①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시</u> 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0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u>・군수・구청장</u>
<u>장</u> 이 부과·징수한다.	